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
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에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9명) 및 자체감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공유에 필요한 인력 4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 조교 3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신규 사업의 기획·추진을 위한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18명(5급 9명, 6급 9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962”를 “26,982”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0,821”을 “20,825”로 하며, 대학 계 “19,088”을 “19,092”로 하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6,179”를 “16,180”으로, 조교 “2,872”를 “2,875”로 하며, 일반직 계 “6,114”를 “6,13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032”를 “6,048”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조 관련)

1. 제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19
교육공무원 계	19
대학 계	19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4
조교	5

2. 제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8
일반직 계	18
5급 이하	1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한시정원) (생략)	제3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962</u>	<u>26,982</u>	+20
교육공무원 계	<u>20,821</u>	<u>20,825</u>	+4
대학 계	<u>19,088</u>	<u>19,092</u>	+4
.	.	.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u>16,179</u>	<u>16,180</u>	+1
조교	<u>2,872</u>	<u>2,875</u>	+3
.	.	.	
.	.	.	
일반직 계	<u>6,114</u>	<u>6,130</u>	+16
3급 또는 4급 이하	<u>6,032</u>	<u>6,048</u>	+1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08